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3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민홍철・이재정・문대림

이기헌 • 복기왕 • 윤종군

염태영 • 이소영 • 양문석

김준혁 · 황운하 · 이건태

황 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, 수면장애, 우울증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,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12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조사·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"교육문화사업 등"을 "교육문화사업,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	제18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환경보
	건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
	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
	대하여 조사・평가한 결과를
	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
	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⑧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
	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
	결과를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
	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	제19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)
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	①
음 각 호와 같다.	
1. 주민복지사업: 공동이용시설	1
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	
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	-교육문화사업, 의료사업 및
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	건강증진사업 등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	
한다.	
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